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2022. 9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의회 운영 위원회

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(의 회 운 영 위 원 회)

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·부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한 시정,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및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구현하고,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·활용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○ 2022. 9. 16.(금) ~ 9. 22.(목) [7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

○ 마포구 의회사무국

4. 감사실시 경과

가. 감사반 편성

| 구 분 | 감 사 위 원 | 대상기관 | 감사장소 | 전문위원 | 사무직원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의회운영 위원회 | [위원장] 남해석 [부위원장] 이한동 [위원] 강동오, 고병준, 이상원, 차해영, 최은하 | 마 포 구 의회사무국 | 의회운영 위원회실 | 신준호 | 최은영 |

나. 감사일정 및 장소

| 일 자 | 감사대상부서 | 감사장소 | 감 사 방 법 | 비 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2022.9.20.(화) | 의회사무국 | 의회운영 위원회실 | 증인선서 업무보고 및 질의·답변 | |

5. 주요감사 실시내용

- 의회 시설 유지 관리(건축, 통신 등)에 관한 사항
- 의회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
-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
- 의정활동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-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

6. 감사결과 처리의견

가.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

- 2021년도 의회 방송설비 교체하였으나 설치 후 음향상 미비점이 많음. 음향시설은 설치 완료 후 AS문제, 음질문제가 중요함. 전반적으로 기술적 재점검을 해주길 바람.
- 의회 도서구매와 관련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이니만큼 경각심을 가지고, 필요한 도서 구매 시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」를 바탕으로 되도록 지역서점을 통해 구매하여, 독립서점과 지역서점 활성화에 힘써주기를 바람.
- 의회 방송 장비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프트웨어가 상호보완이 안된다는 것임. 현재 많은 보수의 필요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

유는 우리구의회 규모에 비해 저가의 방송장비를 설치했기 때문임.
추후 이런 중요하고 큰 공사 추진 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장비 구입으로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.

- 작년 의원수첩이 늦게 제작되어 필요할 때 쓰지 못해 불편을 겪음.
올해 의원수첩 제작은 다양하게 샘플링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기 제작 바람.
- 의회사무국 직원복지 차원에서 사무국 내 화장실에 비데와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.
- 모의의회 개최 시 형식적인 회의 진행만 하는 것이 아닌 모의의회 참여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, 그 요구사항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멘토가 되어 함께 회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의견이 의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.
- 의회 SNS가 더욱 다양한 콘텐츠 기획으로, 맞춤형 의정 홍보 및 구민에게 조례 및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람. 향후 구의회 홍보기록팀의 전문성을 위해 기획·홍보 관련 전문 인력이 채용 계약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.
- 입법·법률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들과 변호사 간담회를 추진하여 정책적으로나 입법활동 지원 면에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람.

- 의회사무국은 5급 과장 직위가 없는 기형적인 형태임. 조직이 유연하고 원활하게 업무 추진이 되려면 각 팀을 통솔하고 의정활동을 지휘할 5급 과장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법적 제도적 현황을 고려해서 살펴봐주길 바람.

나. 처리의견

-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『지방자치법』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의회사무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0월 28일까지 의장(의회운영위원장)에게 보고하도록 함.